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080 발의연월일: 2025. 4. 23.

발 의 자:황명선·김현정·박 정

박정현 · 황정아 · 이정문

민병덕 • 이개호 • 손명수

박해철 • 박지원 • 백선희

오세희 • 박용갑 • 김남근

박민규 • 정일영 • 박균택

이언주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 등이 신호기·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권한은 경 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 위임·위탁할 수 있으며, 실제로 횡단보도나 신호기의 설치·폐지와 관하여서는 시·도 경찰청 또는 경찰서 소관 의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임.

지자체가 지역의 교통 환경, 인구 구조, 보행자·차량 통행 특성 등현장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어, 신호등이나 횡단보도의 설치·관리 권한을 지자체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이에 개정안은 시장 등의 소속으로 교통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교통안전시설의 수요 예측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철거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안전의 실효성 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교통안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① 교통안전시설의 원활한 설치·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등 소속으로 교통안전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교통안전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1.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 관리 · 철거 등에 관한 사항
- 2. 제3조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관련 부담금 부과 및 환급의 적정성 심사에 관한 사항
- 3. 교통안전시설의 수요 예측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시장등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교통안전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시장등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한다.

- 1. 교통공학, 전자공학 또는 그 밖의 교통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 2.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 원 등 교통 관련 연구기관의 석·박사급 연구원의 직에 있는 사람
- 3. 교통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에서 활동하는 사람 등 관련 분 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와 관련된 시민 단체의 구성원으로 시민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5.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의 교통 관련 부처 과장급 공무원
- ④ 교통안전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신 설>	재 정 안 제3조의2(교통안전자문위원회 설 치・운영) ① 교통안전시설의 원활한 설치・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 기 위하여 시장등 소속으로 교 통안전자문위원회(이하 이 조 에서 "교통안전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철거 등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 시설 관련 부담금 부과 및 환급의 적정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교통안전시설의 수요 예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시장등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교통안전자문위원회는 위원
	② 교통안선사문위원되는 위원 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등이 되고, 위

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 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1. 교통공학, 전자공학 또는 그 밖의 교통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 2.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건설기 술연구원 등 교통 관련 연구기관의 석·박사급 연구원의 직에 있는 사람
-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에 따른 교통약자와 관련 된 시민단체의 구성원으로 시민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5.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의 교통 관련 부처

과장급 공무원

④ 교통안전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한다.